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 농정이슈 보고서

11-08 2011/12/01

농업재해대책 및 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목 차

- I. 들어가며
- II.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검토사항들
- III. 농업재해대책의 현황 및 문제점
- IV. 농어업재해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 V. 농업재해대책 및 농어업재해보험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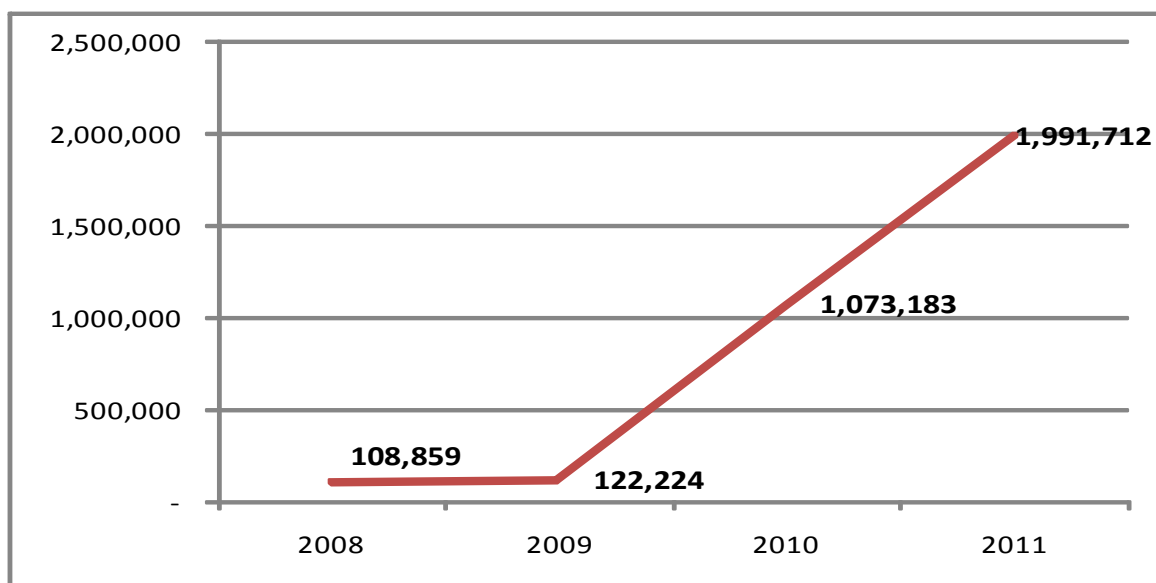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 연구분과

- ※ 본 보고서는 2011년 12월 1일(목) 충북 괴산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한농연 및 정범구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린 “농작물 재해대책 및 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한농연의 주제발표문 전문입니다.
- ※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보도하시기를 원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 한민수 연구팀장(070-7165-0017, minsuaerd@gmail.com)에 게 반드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I. 들어가며

-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기상이변이 심화됨에 따라,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그림 1 참조). 특히 2010년도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는 1조 1,284억원으로 2009년의 1,222억원, 2008년 1,089억원의 10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¹⁾
 - 2011년 올해 들어서도, 겨울철 이상 한파로 인한 과수농가들의 냉해 피해, 여름철의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 현상, 병충해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림 1) 2008년부터 2011년 8월까지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 지원액 추이(단위 : 백만원)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 피해 농가의 생계보장을 위한 재해구호제도와 ▲ 농가소득의 안정을 위한 재해보험제도의 이원화된 구조로 시행해 오고 있다.
 - 정부는 재해구호제도의 지원 상한을 2006년 최대 3억원에서 2010년 5천만원으로 축소하는 대신, WTO 협정상 허용대상보조 제도인 농어업재해보험 제도를 확충·강화하는 정책 기조를 발전시켜 왔다.
 - 2001년 사과와 배에 처음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은 2011년 현재 총 30개 농작물에 대해 본사업 및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정을 통하여 농수산업 관련 보험이 통합되었다.
 - 농어업재해보험 제도는, 행정안전부의 ‘풍수해보험’ 등 국내 유사한 정책보

1) 너름(2011), p.2

험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타 농업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정책 모범사례로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다.²⁾

- 그러나 정부의 농업재해대책 및 농어업재해보험 제도에 대한 일선 농업인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농업재해대책과 관련해서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또는 보상이 없고 ▲복구 지원 기준이 불합리하며 ▲복구 지원단가 또한 시세의 60~70%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 악성 농가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해서도 ▲본사업 및 시범사업 대상 품목이 2011년 현재 30개에 불과하고 ▲농가 입장에서 보험료 부담이 커 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며 ▲특약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보장 대상재해가 제한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 때문에 농업인단체는 물론 학계 차원의 현황 분석을 통하여 농산물 재해대책 및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조사·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나, 지금까지 축적된 성과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 한농연은 2002년 대선 공약 요구사항으로 “재난 극복 차원의 농업재해대책법 제정(표 1 참조)”과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및 공영보험적 기능 강화”를 제시하였으나, 이후에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농업재해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가운데, 대규모 농업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의 지원 확대만을 간헐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에 그쳤다.
 - 학계 차원에서도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으나, 악성 고액 농가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열악한 농가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농업재해대책의 내실화와 연계한 농어업재해보험 강화방안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일선 농업인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 최경환(2010), p.31

(표 1) 2002년 대선 당시 한농연의 농업재해대책법 제정 요구사항

- 한해를 비롯한 제반 농업재해(수해, 풍해, 냉해 등)에 대한 대책 및 복구방법 규정
- 대과시 농기계 가동·임대비를 생산비에 포함하여 피해 작물의 생산비 70% 이상을 국가에서 보상
- 대과가 불가능한 경우 3년간 소득 평균의 80% 이상 보상
- 피해지역의 범위 및 피해액 규정 철폐
- 첨단, 고가의 영농장비 및 농기계, 농업시설물 등을 지원 항목에 포함
- 피해 경작면적 지원 한도를 현실에 맞게 늘려 실질적인 영농재기를 도모
- 재해대책 예산을 정규 예산 항목으로 편성

자료 : 한농연(2002), p.41

- 농업재해대책 및 농어업재해보험과 관련한 지난 10여년 동안의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는 아래의 내용들을 차례로 점검한 뒤 일선 농업인의 입장에서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농업재해로 인한 악성 농가부채 등의 농가경제 악화 문제, 이를 감안한 정부 농업재해 관련 정책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 모색
 - 정부의 농업재해대책의 현황 및 문제점 검토
 - 농어업재해보험(농작물재해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검토
 -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농업재해대책 및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개선 방안

II.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검토사항들

1.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경제 여건 악화

- 한농연의 2009년 농가부채 현황 설문조사 결과, 2008년을 기준으로 후계농업경영인 1인당 농가부채는 평균 1억 8,38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후계농업경영인 1인당 농가부채 평균 : 1억 8,382만원(총 응답자 602명)
 - 1인당 평균 연대보증 금액 : 7,563만원
 - 연체 부채가 있는 응답자 : 77명
 - 연체 부채가 있는 응답자들의 평균 연체액 : 1억 726만원
 - 자산-부채 비율(장기 부채 상환능력) 평균 : 268.45%
 - 소득-부채 비율(단기 부채 상환능력) 평균 : 512.79%
- * 자산-부채 비율 및 소득-부채 비율의 분포도는 (표 2)를 참조

(표 2) 자산-부채 비율 및 소득-부채 비율의 분포도

위험수준	농가수(호)	구성비(%)	위험수준	농가수(호)	구성비(%)
40% 미만	105	34.8	50% 미만	57	17.1
100% 미만	87	28.8	100% 미만	28	8.4
200% 미만	50	16.6	200% 미만	72	21.6
200% 초과	60	19.9	200% 초과	176	52.9

자료 : 한농연(2009)

○ 한농연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젊고 경영 규모가 큰 후계농업경영인들의 농가부채 증가의 핵심 요인 중 하나가 농업재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농가부채가 “증가하였다”는 응답자 : 364명(응답자의 60.5%)
- 후계농업경영인들은 농가부채 증가를 초래한 두 번째 요인으로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따른 소득 감소”를 꼽고 있었다(표 3 참조).
- 문제는 “농업재해로 인한 소득 감소⇒자녀 학자금 등 가계비 증가에 대응한 추가 차입⇒부채 상황을 위한 대출(대환)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해소되기는커녕, “농산물 생산비 급등” 및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추가적인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될 경우, 해당 농업인은 연체·신용불량자의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표 3) 농가부채의 발생(증가) 요인 (가장 중요한 항목 하나만 선택)

농산물 생산비 급등	농산물 가격 하락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따른 소득 감소	자녀 학자금 등 가계비 증가	부채상황을 위한 대출	기타	무응답	계
67	53	123	239	9	43	68	534

자료 : 한농연(2009)

2. “강요된 전업농”의 현실을 반영한 농업재해대책의 중요성

○ 고액 농가부채를 전제로 한 규모화·전업화된 농업경영이 보편화된 우리나라의 여건을 감안할 때, 정부의 농업재해대책 및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상당한 제약 조건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반드시 감안해야 할 것이다.

- 원칙적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규모화·전업화된 후계농업경영인을 포함한 전업농가가 자신의 농업 경영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 요소(농작물 재해, 농산

물 가격 하락, 농산물 생산비 증가 등)에 대하여 일정 부분 자가 부담(농작물재해보험, 가축보험, 풍수해보험 등)을 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의 정부의 각종 농업재해대책의 기조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확대되어 왔다.

- 그러나 후계농업경영인을 포함한 30~50대 우리나라의 대다수 전업농가들은, 자녀교육 등 생활비를 벌기 위해 농업조수익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규모의 정책자금 및 상호금융 대출을 통해 영농 규모를 늘려왔다는 점에서, 농업선진국과는 전혀 다른 이른바 **“강요된 전업농”**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 특히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불거진 악성 농가부채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한 채 동시다발적 FTA 등으로 인해 농가경제 여건이 악화 일로를 걸어온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농업인의 최소 생존권 및 영농 여건 보장을 위한 방향으로 정부와 지자체, 농협 등의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 그리하여 오늘 토론회에서 우선 집중해야 할 관점과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강요된 전업농”의 열악한 농가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전업농가의 생존권과 영농 여건을 보장하면서도, 일정 부분에 대해 스스로 위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는 무엇인가?
- 농어업재해보험(농작물재해보험, 가축보험 등)을 내실화하여 농업인 보호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 과제는 무엇인가?
- 농어업재해보험(농작물재해보험, 가축보험 등)의 대상 품목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가입 최소기준에 못 미치거나 대상 품목 및 본사업·시범사업 지역에 포함되지 못하는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는 무엇인가?

Ⅲ. 농업재해대책의 현황 및 문제점

1. 농업재해대책의 주요 내용

-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관련 법령의 체계는 아래 (표 4)와 같다.
 -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재난안전기구로 중앙 및 지방에 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있다.
 - 재난 규모가 커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특별 지원을 시행한다.

(표 4) 우리나라의 재난관련 법률 체계

법률명	소관부처	주요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소방방재청	재난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소방방재청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및 근원적 재해예방·복구제도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식품부	농업 및 어업재해 대책
농작물재해보험법	농식품부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로 인한 농작물 재해 보상
풍수해보험법	소방방재청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인한 재해

자료 : 농식품부(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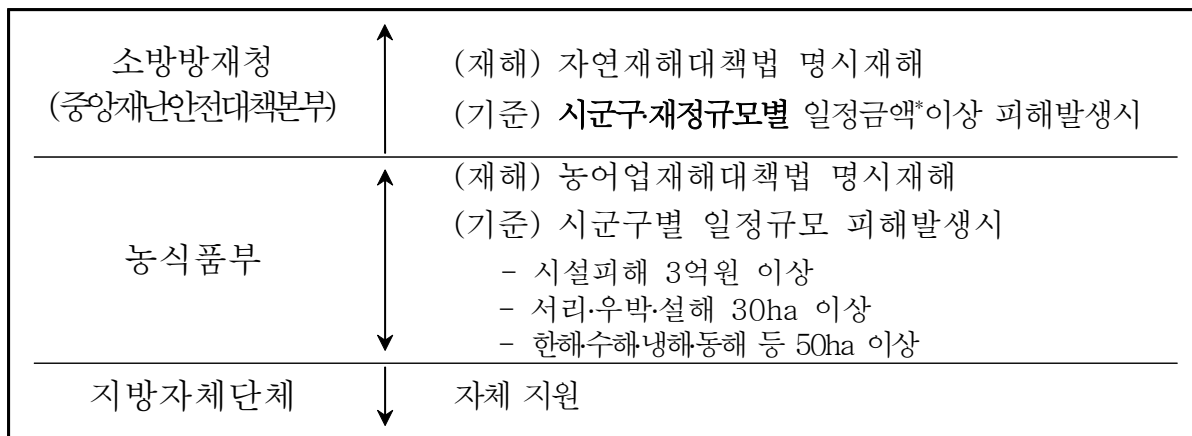
- 국가 및 지자체의 농업재해 지원은 아래와 같이 이뤄진다.
 - 자연재해대책법(소방방재청) 및 농어업재해대책법(농식품부)에 의하여 아래 (표 5)에 제시된 재해에 대하여 지원한다.
 - 중앙정부의 복구지원 대상은, 농업재해가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가 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표 6)와 같이 나타날 경우 지원 가능하다. 단, 동일 재해기간 중 지원을 받는 시·군의 연접한 시·군은 기준 이하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라도 지원 가능하다.

(표 5) 중앙정부 복구지원 대상인 농업재해 (2011년 현재)

관련법령	대상 재해
자연재해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조수(潮水)
농어업재해	수해·풍해·조해(潮害)·설해·동해·병충해·한해(旱害)·냉해·우박·서리·일조량부족·유해야생동물

자료 : 농식품부(2011)

(표 6) 농업재해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체계 (2011년 현재)



시군구 재정규모*	피해액(시설)	시군구 수	비고
100억원 미만 시군구	14억원 이상	17	
100억원 이상~35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64	
350억원 이상~600억원 미만	26억원 이상	53	
600억원 이상~850억원 미만	32억원 이상	27	
850억원 이상	38억원 이상	70	

* 재정규모 : 최근 3년간 연평균 보통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의 합산액
 자료 : 농식품부(2011)

- 농업 분야의 재해복구 지원 항목은 아래 (표 7)과 같으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있는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의거하여 총 100단계로 나눈 재난등급에 해당하는 지원금(최대 5천만원, 최소 50만원)이 지급된다(별표 2 참조).

(표 7) 농업 분야 재해복구 지원항목

구분	지원항목	지원비율 (%)	지원조건 및 지원액
직접지원	농업용 시설복구	보조 35, 융자 55	지원액 = 기준단가×피해면적
	대파대·가축입식비	보조 50, 융자 30	지원액 = 기준단가×피해면적
	농약대	보조 100	지원액 = 기준단가×피해면적
간접지원	생계지원비	보조 100	(77만원/농가)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	1년	농가단위 피해율 30~50%
		2년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영농자금 신규지원	융자 100	농식품부 장관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
고교생 학자금면제	보조 100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직접지원 예시) 대파비 : 일반작물 220만원/ha, 시설채소(엽채류) 297만원/ha,
 * 간접지원 예시) 생계지원비 77만원(양곡 80kg 5가마 해당), 학자금 면제(광역시 45만원)
 자료 : 농식품부(2011)

2. 농업재해대책의 문제점

- 피해 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긴급 생계 지원 지원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의 법령에 근거한 현행 농업재해 대책은 긴급 복구 및 생계 지원 위주의 대책으로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 그마저도 구호비는 1인당 1일 기준 6천원, 생계지원비는 74만 1,600원(쌀 80kg 5가마 기준)에 그치고 있어, 주거지와 영농 기반이 파괴된 피해 농가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어렵다(별표 1 참조).

- 복구지원 기준이 피해 농업인에게 불리하게 돼 있으며, 복구 지원단가도 시세의 70% 수준에 그쳐 영농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 농업용 시설 복구(보조 35%, 용자 55%), 대과대·가축입식비(보조 50%, 용자 30%)의 지원 비율이 낮은 실정인데다, 지원 기준 또한 피해 면적 위주로 짜여져 있다.
 - 이 때문에 재배 면적이 작은 농업인은 대과대·가축입식비·농약비 등의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경우마저 발생하고 있으며, 기준을 어렵사리 충족시키는 농업인마저도 영농 재기를 위해서는 높은 비율의 자부담·용자 부담까지 짊어져야 한다(표 7 및 별표 1 참조).

- 농어업재해보험·풍수해보험 등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현행 농업재해대책은 농어업재해보험(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풍수해보험 등의 최소 가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본사업·시범사업 대상 지역·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에 대한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다.
 - 농어업재해보험이나 풍수해보험 등을 통하여 농작물 재해 및 일부 농업용 시설에 대한 보장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 보험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고가의 농업용 시설과 농기계, 각종 장비의 피해를 보상받기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 더욱이 (별표 2)에 제시된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의하면, 최고 재난등급인 100단계에 해당될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만 지원받도록 되어 있다.
 - 이 때문에 거액의 정책자금 및 상호금융 자금을 차입하여 각종 시설 및 장비에 투자한 농업인이 재해를 당할 경우, 자칫 재기 불능의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될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IV. 농어업재해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1. 농어업재해보험의 주요 현황

- 농식품부 소관 농어업재해보험(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2010년에 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요 운영 현황은 아래 (표 9)와 같다.³⁾

(표 9) 농어업재해보험 운영 현황

구 분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도입년도		2001	1997	2008	
담보 재해	특정 위험 방식	주 계약	태풍(강풍), 우박	풍해, 수해, 설해, 질병, 화재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이상조류, 적조
		특약	동상해, 집중호우, 나무보상	축사(풍해, 수해, 화재), 전기장치위험	수산질병, 양식시설
	종합위험방식	대다수 자연재해	-	-	
국고 지원	순보험료	50%	가축 50% (축사특약 30%)	50%	
	운영비	100%		100%	
	지원율	총보험료의 66%	총보험료의 50%(30%)	총보험료의 66%	
예산('11)		972억	331억	64억	
보상수준 유형		70%, 80%	가축: 시가의 80~95% 축사: 손해액의 100%	70~90%	
가입방식		임의가입	임의가입	임의가입	
보험사업자		농협	농협·LIG	수협	
가입률('10)		36.0%	54.2%	21.3%	

자료 : 정범구(2011), p.17

3) 이 글에서는 농업 분야에 적용되는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보험만을 살펴도록 한다.

○ 농작물재해보험의 주요 현황

- 2011년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30개이다. 시설채소의 경우에는 시설 자체도 보험의 대상이 되고 있다(표 8 참조).
- 보장 대상재해는 (표 9)에 제시된 것처럼, 초기에는 태풍·우박·동상해 등에 한정된 특정위험방식 위주였으나, 최근 도입되는 시범사업의 경우 종합위험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 보장수준(인수범위)는 70%형과 80%형을 택하고 있으며, 가입방식은 임의 가입 방식으로 하되 품목별 가입 최소 기준을 (표 10)과 같이 정하였다.

(표 8)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2011년 현재)

구분	보험 대상 품목 (괄호 안 숫자는 품목수)	비고
식량	벼,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5)	
채소	양파, 고추, 수박, 마늘, 풋고추, 애호박(6)	
과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뽕은감, 자두, 참다래, 매실(10)	
시설(채소)	딸기, 참외, 토마토, 오이(4)	시설 포함
화훼	국화, 장미(2)	
임산물	밤, 대추, 복분자(3)	
계	30	

(표 9) 농작물재해보험의 품목별 대상재해

구분	특정위험방식	종합위험방식
대상 품목	사과, 배, 감귤, 단감, 뽕은감	복숭아, 포도, 참다래, 자두, 콩, 양파, 감자, (시범사업 품목 18품목)
대상 재해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한해(旱害), 냉해, 조해(潮害), 설해, 기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보장 유형	70% 보장형(자기부담금 30%형) 80% 보장형(자기부담금 20%형)	70% 보장형(자기부담금 30%형)

(표 10) 품목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최소 기준

사과·배 등*	고추·감자·양파·마늘	고구마	옥수수	벼	콩	밤	수박
1,000㎡	1,500㎡	2,000㎡	3,000㎡	4,000㎡	4,500㎡	10,000㎡	하우스 1동

* : 사과·배·복숭아·포도·감(단감·뽕은감)·감귤·참다래·자두·매실

○ 가축재해보험의 주요 현황

- 1997년 농협중앙회의 가축공제로부터 시작되어, 2011년 현재 총 13개 축종으로 확대되었다(표 11 참조).

- 축산발전기금으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축사 특약에 대해서는 30%가 지원되고 있다.

(표 11) 가축재해보험 대상 15개 축종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사슴, 양, 벌, 토끼, 관상조

2. 농어업재해보험의 문제점

- 낮은 보장 수준, 불공정한 손해 평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농어업재해보험(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의 농업인 가입율이 저조하다.
 -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2001년 최초의 시범사업이 시작된 사과와 배를 제외하면 2010년 기준으로 과실류의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면적 기준 50% 미만, 농가 기준 4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우 저조하다(표 12 참조).

(표 12) 2010년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현황(과실류)

구분	면적 대비 가입현황(단위 : ha)			농가 대비 가입현황(단위 : 호)		
	대상면적	가입면적	가입률(%)	대상면적	가입농가	가입률(%)
사과	17,563	14,116	80.4	36,989	16,554	44.8
배	14,748	9,237	62.6	26,052	10,451	40.1
복숭아	6,673	1,158	17.4	19,847	1,944	9.8
포도	12,619	780	6.2	31,004	1,766	5.7
감귤	17,734	305	1.7	20,158	492	2.4
단감	10,082	3,643	36.1	22,555	3,472	15.4
뽕은감	4,277	854	20.0	15,252	1,322	8.7
합계	83,696	30,093	36.0	171,857	36,001	21.0

자료 : 너름(2011), p.10

- 이는 보험 도입 초기 과실류(사과·배·감귤 등)에 대한 주계약 대상재해가 태풍·우박·동상해·호우·강풍 등으로 한정된 반면 품목별 특정 재해는 특약 형태로 보장토록 돼 있었으며, 보험 대상 품목 확대 과정에서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상품설계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농업인들이 보험 가입시 주계약 및 특약 내용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농작물재해보험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최경환(2010)이 수행한 재해보험 가입 경험자 대상 설문조

사 결과, “보장 대상 재해가 제한적(총 응답자 중 34.3%)”이고 “낮은 보장 범위(18.2%)” “불공정한 손해 평가(15.3%)” 때문에 농작물재해보험에 재가입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⁴⁾

- 같은 자료에 나온 재해보험 미경험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보장 대상 재해가 제한적(32.1%)”, “손해평가 불만족(19.6%)”, “낮은 보장범위(8.6%)” 순으로 나타나 재해보험 가입 경험자 설문조사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⁵⁾

○ 농업인에게 부담스러운 보험료 수준, 까다로운 보험료 납부 방식 또한 농업인들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농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앙정부가 보험운영비의 100%, 농가 부담 보험료의 50%를 부담하고 있으며, 지자체(광역, 기초) 또한 평균 26%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 하지만 1ha의 과수원을 경영중인 농업인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시 지불하는 보험료는 평균 75만원으로 나타나, 농가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및 자금 회전이 여의치 않은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 특히 현행 보험료 납부 제도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료가 50만원 이상인 계약자에 한하여 2회 분납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시범사업에서는 일시납만 적용하고 있어, 농업소득이 거의 없는 반면 영농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봄철에 농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 보험 대상 품목 및 적용 지역이 한정돼 있다.

- 우리나라 농작물재해보험은 10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 동안 30개 품목으로 분사업·시범사업이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보험 대상 품목 및 적용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개별 작물·축종과 관련한 증장기 데이터의 축적·분석은 물론 도상훈련이나 시범사업 경험이 일천한 상황에서, 보험 대상 품목과 적용 지역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한계점과 불가피성은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지구 온난화 및 기후 변화로 인하여 농업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강해질 수밖에 없는 미래 여건은 물론, 동시다발적 FTA 등 농업개방 확대 등 농업인의 경제사회적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WTO 농업협정의 허용대상 보조정책인 농어업재해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와 학계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4) 최경환(2010), p.82

5) 최경환(2010), p.86

V. 농업재해대책 및 농어업재해보험 개선 방안

1. 농업재해대책 개선 방안

- 재해 복구비용의 국가 지원 비율 및 지원 단가를 개선해야 한다.
 - 농업용 시설 복구, 대파대, 가축재입식 등을 위한 비용의 국가 지원 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임으로써, 피해 농업인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높은 용자 및 자부담 비율을 낮춰야 한다.
 - 작물·축종별, 시설·장비 등에 대한 피해액 기준 및 재해 복구비용과 관련한 지원 단가는, 매년 민간 시장의 실제 거래가격을 적용토록 현실화하여 개선해야 한다.
- 단기적으로는 농어업재해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개선시켜야 한다.
 - 시·군당 일정 금액 및 기준 면적 이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만 복구비를 지급하는 현행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농어업재해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작물 및 시범사업 미적용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 이하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중앙정부의 복구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지원 한도 또한,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작물 및 시범사업 미적용 지역에 대해서는 대폭 인상시켜야 한다.

2. 농어업재해보험 개선 방안

- 대상 품목 및 적용 지역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농어업재해보험 지원 대상 품목 및 적용 지역 확대가 이뤄지기 가장 어려운 요인 중 하나가, 기초 통계의 체계적인 정리는 물론 도상훈련·시범사업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지역별, 품목·품종별 기초 통계를 가장 효과적으로 확보·관리할 수 있으면, 농식품부가 추진중인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 보장 대상 재해를 다양화해야 하고 지역별·품목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 최경환(2010)에 의하면, 2010년 봄 전국적으로 이상저온으로 봄철 동해가 발생했을 때 특약에 가입하지 않는 농가들이 봄철 동해로 인한 피해를 왜 보장해 주지 않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 특히 가을철 동상해 피해 보장 시기가 11월 10일까지이지만 특정 지역에

서는 수확 작업이 11월 중순까지 이뤄지는 곳도 있어, 피해보장 시기 이후 발생한 동상해는 보장받을 수 없는 모순점이 발생하고 있다.

- 본사업 대상 품목(사과, 배, 감귤, 단감, 뽕은감)의 주계약 대상재해가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으로 한정돼 있는 특정위험방식으로 돼 있는데, 최대 10여년의 운용 경험과 데이터가 축적된 이들 품목에 시범사업 품목에도 적용되는 종합위험방식을 통한 보장이 이뤄지지 않아 농업인이 추가 비용을 들여 특약 가입을 해야 하는 모순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 아울러 같은 품목이라 할지라도 기존 본사업·시범사업 관련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분석을 통하여, 지역별 영농 형태 및 기후 패턴의 특성을 반영한 보험 상품의 정밀한 설계·운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손해평가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강구·시행되어야 한다.

- ▲손해평가인에 대한 교육·연수를 체계화하고, ▲“(가칭)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 국가 자격인증 제도를 신설·운영하여, 중앙정부의 공식 인증을 받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손해평가 능력을 구비한 인원만이 손해평가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공정한 손해평가를 위하여, ▲피해 농업인이 요구할 경우 타 지역의 손해평가인이 교차평가토록 하고 ▲농식품부, 소방방재청, 감사원 등이 손해평가 결과를 표본 조사하여 모니터링하는 방안 또한 도입되어야 한다.

○ 농업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험료 납부 및 환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 농업인이 일시납으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되, 자금 여력이 충분한 전년도 수확기(10~12월)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는 할인율을 상향 조정해 줌으로써, 농사자금 수요가 몰리는 봄철 농번기에 가입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 부득이하게 봄철 농번기에 가입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자에 대하여 가을 수확기(9월~10월)까지 3~4회로 나눠 분납할 수 있도록(시범사업 대상 작물도 포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가입 농업인이 방재시설을 제대로 설치·운영하고 재해를 당하지 않아 3년간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무사고 환급제도를 통하여 다음 해 보험료를 감면해 주거나 현금으로 환급토록 해야 한다.

○ 농협(중앙회, 일선 조합)이 적극적으로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액을 늘림으로써,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

- 중앙정부가 농업인 보험료의 50%를 부담하고 있으며, 지자체(광역, 기초)들 또한 매년 지원 예산을 편성·지원하여 평균적으로 보험료의 25% 정도

를 부담해 오고 있다.

- 여기에 ▲농협중앙회가 상호금융특별회계 운용 수익 혹은 조합상호지원자금 중 일부를 투입하고 ▲일선 조합은 자체 교육지원사업비에서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조합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서를 개정)함으로써 농협(중앙회, 일선 조합) 차원에서 15%의 보험료를 분담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만약 이러한 제안이 현실화된다면, 일선 농업인들의 실제 부담률은 10%로 크게 낮아져 ha 당 30~40만원 정도의 비용만 부담하게 됨으로써, 농업인들의 보험 가입률이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 경영상 위험요소에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농업인의 의식 개선 및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홍보가 이뤄져야 한다.

- 논리적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농업재해대책과 농어업재해보험·풍수해보험 등의 공적 보험 제도가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 아울러 규모화·전업화된 농업인·농업경영체가 자신의 경영상 위험요소를 경감·통제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의식 개선 및 실천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 농어업재해보험 제도가 농업인에게 실효성 있는 경영안정대책이 될 수 있음을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을 통해 꾸준히 인식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 또한 높다.
- 특히 농업경영체 대상 맞춤형 회계교육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해 적극 교육·홍보함은 물론, 개별 농업인(농업경영체)의 실정에 맞는 재무 상담 및 보험 설계(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⁶⁾

참고문헌

- 너름(2011), “농업재해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농업재해대책의 방향과 과제-”, 너름 제64호 이슈보고서, 이호중, 2011.10
- 농식품부(2008), “농업재해대책 업무편람”, 2008.7
- 농식품부(2011),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서”, 2011.1
- 농식품부(2011), “제3차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 자료”, 2011.2
- 송훈석(2010), “농어업재해보험의 현황과 과제 -농작물재해보험과 어선·어선원

6)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가 2010년 및 2011년 시행중인 “농업경영체 맞춤형 회계교육”은, 단순히 복식부기 기장 기법의 교육에만 그치지 않고, 농업경영체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올바른 경영 마인드와 경영 관리의 필요성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정부와 농협, 지자체 등이 집중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재해보험의 중요성 및 효과에 대한 교육·홍보 효과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연구소 농정이슈 보고서 (11-08호)

재해보험을 중심으로-”, 송훈석 국회의원실 국정감사 자료집,
2010.9

정범구(2011), “농어업재해보험 실시, 그 현황과 정책과제”, 정범구 국회의원실
국정감사 자료집 제2권, 2011.9

최경환(2010), “농작물재해보험의 성과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서 R615, 2010.10

한농연(2002), “차기정부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농정의 방향”, 한농연 2002년
대통령선거 공약 요구 정책자료집, 2002.11

한농연(2009), “한농연 2009년도 농가부채 설문조사 분석 결과”, 한농연농업정
책연구소 농정이슈보고서 09-11호, 2009.8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별표 1)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 소방방재청고시 제2011-11호
-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123호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39호
- 산림청고시 제2011-43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산림청장

1.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지원

품목별	규격	단위	단가(원)	비고
가. 사망·실종·부상자 구호				
(1) 구호금	사망·실종자(세대주)	인	10,000,000	
	사망·실종자(세대원)	인	5,000,000	
	부상자(세대주)	인	5,000,000	
	부상자(세대원)	인	2,500,000	
나.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				
(1) 구호비	구호비	1인1일	6,000	
(2) 생계지원	양곡 5가마(80kg)	5가마	741,600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농작물, 축산물 관련 사항만 발취)

품목별	규격	단위	단가(원)	비고
가. 주택복구				
(1) 주택파손	전과/유실	동	30,000,000	
	반과	동	15,000,000	
(2) 주택침수	침수주택수리비	세대	600,000	
(3) 세입자보조	입주보증금	세대	3,000,000	
	임대료	세대	3,000,000	
나. 농경지 복구				
(1) 농경지 유실매물	농경지 유실	m ³	6,958	
	농경지 매물	m ³	4,200	
다.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1) 농림시설 파손·유실				
- 비닐하우스	철골펫트온실	m ²	82,715	
	철골유리온실	m ²	117,390	

품목별	규격	단위	단가(원)	비고
	자동화비닐하우스(610평기준)	m ²	30,800	
	철재파이프하우스(A-G형)	m ²	7,940	
	철재파이프하우스(H-K형)	m ²	9,400	
	철재파이프하우스(A-1형)	m ²	3,330	
	철재파이프하우스(B-1형)	m ²	3,550	
	목재하우스(지붕형-300평기준)	m ²	3,420	
	죽재하우스(반원형-300평기준)	m ²	2,280	
	내재해형-자동화(07,08형)	m ²	34,600	신설
	내재해형-자동화(10형)	m ²	48,080	신설
	내재해형-단동(정부)	m ²	15,000	
	내재해형-단동(딸기)	m ²	16,790	신설
	내재해형-단동(참외)	m ²	5,700	신설
	내재해형-단동(광폭 아치형)	m ²	20,760	신설
	내재해형-단동(광폭 트러스형)	m ²	35,280	신설
	내재해형-단동(민간1,2형)	m ²	15,000	
	내재해형-단동(민간3,4형)	m ²	25,000	
	내재해형-단동(민간 8)	m ²	18,040	신설
	내재해형-단동(민간광폭형)	m ²	45,000	
	내재해형-연동하우스	m ²	40,000	
	내재해형-과수하우스	m ²	25,000	
- 인삼재배시설	내재해형-철재시설(민간)	m ²	4,700	
	차광시설A형-연목240×3.6×3.0cm	m ²	2,240	
	차광시설B형-연목180×3.6×3.0cm	m ²	2,150	
- 버섯재배사	병버섯재배사	m ²	403,000	
	판넬재배사	m ²	151,000	
	간이재배사	m ²	75,000	
- 과수재배시설	덕시설	m ²	1,720	
	지주시설	m ²	803	
	방조망	m ²	1,600	
	관수시설	m ²	980	
	방풍망시설	m ²	960	
	간이비가림시설	m ²	1,199	
- 창고 등 부대시설	농산물저장창고(일반)	m ²	300,000	
	농산물저장창고(예냉및저온저장)	m ²	800,000	
	농산물건조시설(저장능력기준)	톤	562,500	
	농기계보관창고(마을공동보관)	m ²	177,000	
- 양액재배시설	내부시설	m ²	10,800	
- 염전시설	염전 소금창고	m ²	208,500	신설
	염전 해주	m ²	69,500	신설
- 산림시설	표고재배사(표준모델 표고양묘)	m ²	27,008	
- 농림시설 철거비	(필요할 경우)	지수		과수목포함
(2) 농작물 및 산림작물				

품목별	규격	단위	단가(원)	비고
복구				
① 대파대				
- 농작물				
	일반작물(무,배추기준)	ha	2,204,286	
	시설채소(엽채류)	ha	2,968,000	
	시설채소(과채류)	ha	3,920,000	
	시설채소(토마토,풋고추,가지)	ha	2,841,108	신설
	시설채소(오이,딸기)	ha	6,852,692	신설
	시설채소(파프리카)	ha	9,017,292	신설
	인삼(묘삼기준)	ha	15,051,400	
	과수(묘목기준)-사과	ha	12,385,219	
	과수(묘목기준)-배	ha	2,707,105	
	과수(묘목기준)-복숭아	ha	2,179,520	
	과수(묘목기준)-포도	ha	2,204,895	
	과수(묘목기준)-단감	ha	1,960,000	
	과수(묘목기준)-감귤	ha	3,645,361	
	과수(묘목기준)-참다래	ha	3,073,284	
	화훼-백합(생육초기)	ha	40,870,435	
	화훼-장미(생육초기)	ha	29,800,295	
	화훼-선인장(생육초기)	ha	27,739,079	
	화훼-심비디움(생육초기)	ha	31,681,104	
	화훼-안개초(생육초기)	ha	12,000,000	
	화훼-국화(생육초기)	ha	12,957,280	
	화훼-카네이션(생육초기)	ha	42,315,200	
	화훼-글라디올러스(생육초기)	ha	19,586,000	
	화훼-호접란(생육초기)	ha	65,765,978	
	버섯류(종묘기준)	ha	42,000,000	
	녹차(묘목기준)	ha	6,586,640	신설
	구기자(종묘기준)	ha	1,620,996	신설
	당귀(종묘기준)	ha	1,845,612	신설
	산약(종묘기준)	ha	2,839,808	신설
	뽕나무(누에 사육용)	ha	1,965,200	신설
	뽕나무(오디 생산용)	ha	8,302,000	신설
- 산림작물				
	표고자목(1.2m)	본	2,200	
	잔디(과중생산비)	m ²	183	
	조경수분재(묘목기준)-조경수	m ²	2,171	
	조경수분재(묘목기준)-분재	m ²	2,171	
	유실수(묘목기준)-밤	ha	994,000	
	유실수(묘목기준)-대추	ha	1,986,800	
	유실수(묘목기준)-뽕은감	ha	1,745,200	
	유실수(묘목기준)-호도	ha	1,180,000	
	야생화(종자대, 비료대)	m ²	200	
	산림작물(묘목기준)-약용류	m ²	608	
	산림작물(묘목기준)-복분자	m ²	198	

품목별	규격	단위	단가(원)	비고
② 농약대	산림작물(묘목기준)-머루	m ²	128	
	산림작물(묘목기준)-다래	m ²	120	
	산림작물(종자대)-도라지	m ²	122	
	산림작물(종자대)-더덕	m ²	305	
	산림작물(종자대)-두릅	m ²	237	
	산림작물(종자대)-취나물	m ²	161	
	병해충방제(일반작물-수도작기준)	ha	99,880	
	병해충방제(채소류)	ha	222,588	
	병해충방제(과수류)	ha	469,500	
	병해충방제(인삼)	ha	166,234	
	병해충방제(약용류)	ha	132,120	신설
	병해충방제(화훼류)	ha	1,302,602	신설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1) 축사파손·유실				
	우사-한육우사	m ²	121,000	
	우사-유우사	m ²	158,000	
	돈사-번식돈사	m ²	239,500	
	돈사-비육돈사	m ²	165,000	
	계사-산란계사	m ²	200,500	
	계사-육계사	m ²	168,500	
	토사-육토사	m ²	70,000	신설
	종오리사	m ²	130,000	
	육용오리사	m ²	130,000	
(2) 축산분뇨시설				
	간이축사-철재(파이프보온덮개형)	m ²	39,000	
	분뇨처리시설-한육우	m ²	78,500	
	분뇨처리시설-젓소	m ²	78,500	
	분뇨처리시설-돼지	m ²	78,500	
	분뇨처리시설-닭(평사)	m ²	78,500	
	분뇨처리시설-닭(케이지)	m ²	78,500	
	분뇨처리시설-오리	m ²	78,500	
(3) 초지유실				
	초지복구(경운초지)	ha	3,854,000	
	초지복구(불경운초지)	ha	2,763,000	
(4) 잠실파손				
	치잠공동사육사(케리아잠실)	m ²	217,700	
	애누에공동잠실(브릭및패널형)	m ²	119,823	
	일반잠실(브릭형)	m ²	108,900	
	조상육잠실(조립식)	m ²	19,617	
(5) 가축입식				
	한우-송아지(3~4개월령)	마리	1,400,500	
	한우-육성우	마리	1,560,000	
	젓소-송아지(분유떼기)	마리	341,728	
	젓소-육성우	마리	1,102,000	
	돼지-자돈(30~35일령)	마리	62,000	
	돼지-육성돈	마리	139,000	
	육계-병아리(감별추)	마리	427	

품목별	규격	단위	단가(원)	비고
	육계-중추	마리	740	
	산란계-병아리(감별추)	마리	611	
	산란계-중추	마리	1,877	
	중계-병아리(육용)	마리	1,123	
	중계-병아리(산란용)	마리	3,400	
	염소-자양(3개월령)	마리	89,000	
	토끼-새끼(무감별)	마리	3,730	
	오리-새끼(육종용)	마리	664	
	오리-중추	마리	2,564	신설
	종오리-새끼	마리	4,786	
	꿀벌-개량종(1군)	군	140,760	
	인공사육(평)-병아리(2-4개월령)	마리	1,665	
	사슴-자록	마리	510,033	
	사슴-자록(엘크)	마리	688,000	신설
	사슴-자록(꽃사슴)	마리	140,000	신설
	사슴-자록(레드디어)	마리	180,000	신설
	말(조랑말, 망아지포함)	마리	528,000	
	말(경주마)	마리	12,824,400	신설
	개(강아지)	마리	24,149	
	칠면조-병아리	마리	3,760	
	거위-병아리	마리	4,631	
	메추리-새끼	마리	100	
	지렁이	m ²	3,228	
	금계-병아리	마리	30,000	
	은계-병아리	마리	74,980	
	백한-병아리	마리	40,000	
	공작-병아리	마리	250,000	
(5) 누에 유실·폐사	유실/폐사-봄누에	kg	11,000	
	유실/폐사-가을누에	kg	11,000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2)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제9조제1항 관련) <개정 2007.9.14>

재난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	재난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
1	49,500~50,000	50,000,000	2	49,001~49,500	49,500,000
3	48,501~49,000	49,000,000	4	48,001~48,500	48,500,000
5	47,501~48,000	48,000,000	6	47,001~47,500	47,500,000
7	46,501~47,000	47,000,000	8	46,001~46,500	46,500,000
9	45,501~46,000	46,000,000	10	45,001~45,500	45,500,000
11	44,501~45,000	45,000,000	12	44,001~44,500	44,500,000
13	43,501~44,000	44,000,000	14	43,001~43,500	43,500,000
15	42,501~43,000	43,000,000	16	41,201~42,500	42,500,000
17	41,501~42,000	42,000,000	18	41,000~41,500	41,500,000
19	40,501~41,000	41,000,000	20	40,001~40,500	40,500,000
21	39,501~40,000	40,000,000	22	39,001~39,500	39,500,000
23	38,501~39,000	39,000,000	24	38,001~38,500	38,500,000
25	37,501~38,000	38,000,000	26	37,001~37,500	37,500,000
27	36,501~37,000	37,000,000	28	36,010~36,500	36,500,000
29	35,501~36,000	36,000,000	30	35,001~35,500	35,500,000
31	34,501~35,000	35,000,000	32	34,001~34,500	34,500,000
33	33,501~34,000	34,000,000	34	33,001~33,500	33,500,000
35	32,501~33,000	33,000,000	36	32,001~32,500	32,500,000
37	31,501~32,000	32,000,000	38	31,001~31,500	31,500,000
39	30,501~31,000	31,000,000	40	30,001~30,500	30,500,000
41	29,501~30,000	30,000,000	42	29,001~29,500	29,500,000
43	28,501~29,000	29,000,000	44	28,001~28,500	28,500,000
45	27,501~28,000	28,000,000	46	27,001~27,500	27,500,000
47	26,501~27,000	27,000,000	48	26,001~26,500	26,500,000
49	25,501~26,000	26,000,000	50	25,001~25,500	25,500,000
51	24,501~25,000	25,000,000	52	24,001~24,500	24,500,000
53	23,501~24,000	24,000,000	54	23,001~23,500	23,500,000
55	22,501~23,000	23,000,000	56	22,001~22,500	22,500,000
57	21,501~22,000	22,000,000	58	21,001~21,500	21,500,000
59	20,501~21,000	21,000,000	60	20,001~20,500	20,500,000
61	19,500~20,000	20,000,000	62	19,001~19,500	19,500,000
63	18,501~19,000	19,000,000	64	18,001~18,500	18,500,000
65	17,501~18,000	18,000,000	66	17,001~17,500	17,500,000
67	16,501~17,000	17,000,000	68	16,001~16,500	16,500,000
69	15,501~16,000	16,000,000	70	15,001~15,500	15,500,000
71	14,501~15,000	15,000,000	72	14,001~14,500	14,500,000
73	13,501~14,000	14,000,000	74	13,001~13,500	13,500,000
75	12,501~13,000	13,000,000	76	12,001~12,500	12,500,000
77	11,501~12,000	12,000,000	78	11,001~11,500	11,500,000
79	10,501~11,000	11,000,000	80	10,001~10,500	10,500,000
81	9,501~10,000	10,000,000	82	9,001~9,500	9,500,000
83	8,501~9,000	9,000,000	84	8,001~8,500	8,500,000
85	7,501~8,000	8,000,000	86	7,001~7,500	7,500,000
87	6,501~7,000	7,000,000	88	6,001~6,500	6,500,000
89	5,501~6,000	6,000,000	90	5,001~5,500	5,500,000
91	4,501~5,000	5,000,000	92	4,001~4,500	4,500,000
93	3,501~4,000	4,000,000	94	3,001~3,500	3,500,000
95	2,501~3,000	3,000,000	96	2,001~2,500	2,500,000
97	1,501~2,000	2,000,000	98	1,001~1,500	1,500,000
99	501~1,000	1,000,000	100	300이상~500	500,000

연구소 농정이슈 보고서 (11-08호)

* 비교

1. 재난지원금의 부담률은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국고추가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군·구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 부담률을 국고 80퍼센트, 지방비 20퍼센트로 한다.
2. 지원기준지수는 별표 1의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3. 재난지수는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으로 한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별표 3)